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6
----------	-----

제출년월일 : 2025. 5. 30.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8조 : 제1항을 제목외의 부분으로 함
- 나. 제14조제1항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로 함
- 다. 제14조제2항 : 교통사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1회, 4시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 등
- 라. 제14조제3항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연 1회, 2시간 이상
 -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등

마. 제14조제4항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성폭력 예방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바. 제14조제5항 내지 제7항 : 교육방법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5백만원 반영예산 활용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4. 25. ~ 2025. 5.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666호, 안전교통과-41555(2025. 4. 25.)호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6442(2025. 4. 23.)호]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6442(2025. 4. 23.)호]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15055(2025. 4. 16.)호]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7525(2025. 5. 19.)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7931(2025. 5. 26.)호]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의 근무자”를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관계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한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의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

마.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강원특별자치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군수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이용대상자) ① (생 략)</p> <p>제14조(교육) ① 군수는 <u>특별교통수단</u> 등의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p> <p>2. 장애인의 인권</p>	<p>제8조(이용대상자)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14조(교육) ① ----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p> <p>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관계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를 말한다)에 대한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1회, 4시간 이상</p> <p>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p> <p>나.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련된 기술</p>

3. 교통약자서비스

4. 성희롱 예방교육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삭제>

<삭제>

(3)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의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

마.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신 설>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⑥ 강원특별자치도 등 다른 지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신 설>

<신 설>

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군수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 보존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이동편의 교육 : 2회(상·하반기) × 10,000천원 = 20,000천원/년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연락처	(033) 330 – 2019